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호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3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서호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
박 · 석, 서상열, 송경택,
신동원, 유만희, 유정인,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종환, 최민규,
허 ·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리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,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포상 등)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23조(포상 등)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23조(감사위원회 규정)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	제24조(감사위원회 규정)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4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을 준용한다.	제25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(포상 등)에 따라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대상 표창 및 포상급 지급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) 예산설명서 등 확인결과 기추진사업¹⁾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 병 준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☎ 02-2180-7953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2025년 <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> : 20,500천원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공직기강확립 추진	=	10,500천원
	10,500,000원		
포상급	○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	=	10,000천원
	- 최우수기관	=	3,000천원
	3,000,000원*1개 기관		
	- 우수기관	=	4,000천원
	2,000,000원*2개 기관		
	- 장려기관	=	3,000천원
	1,000,000원*3개 기관		

자료 : 2025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업설명서